

〈국회세미나 발표자료〉

##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

### 발표 개요

- 일시 : 2018년 5월24일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발표자 :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



## 발표 목차



I. 발표 배경

II.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규모 현황

III. 한·일 주둔미군 지원규모 비교분석

IV. 종합결론

# I 발표 배경

## 1. 발표 배경 및 목적

- 대한민국 정부는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하여 방위비분담금(SMA)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해옴.
- 현재 진행 중인 한·미간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앞서 '11년 이후 중단된 주한미군 직·간접지원규모에 대한 명확한 조사('15년 기준)가 필요하였음
- 최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위분담의 모범사례 (an example for other nations to follow)로 언급한 바, 한·일 양국의 주둔미군 직·간접지원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또한 필요하였음
- 이를 위해 한국국방연구원 (KIDA)은 국방부에 의뢰받아 이러한 직·간접 지원 내역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또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하여 국방부 및 외교부와 협의하여 본 국회 토론회 및 향후 국방백서 등을 통하여 본 내역을 대외에 공개하고자 함.

## 2. 발표 내용

-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산출(2015년 기준) 및 분석
-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규모 조사 및 분석(2015년 기준)
- 주한 vs. 주일 미군 지원비용 비교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 1.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 개요

### 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 개념

-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용 지원은 일반적으로 지원형태에 따라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별함
  - 직접지원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및 편의제공을 통한 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한국정부의 직접적인 정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형태의 지원
    - 방위비분담금(SMA), 카투사 지원,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
  - 간접지원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및 편의제공을 통한 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위한 지원이나 직접적인 정부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형태의 지원
    - 토지임대료 면제, 제세·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 주한미군 지원항목 중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온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과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으로 구별함
  - 지속적 비용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및 편의제공을 위해 주한미군, 기지 및 기지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온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 방위비분담금(SMA), 카투사 지원,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
  - 한시적 비용 :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미간 특별협정 비용 및 주한미군 주둔기지 및 주변지역 외 지역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비용
    - YRP·LPP,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등

## 2.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 현황

### 가. 지원 내역

○ 지속적 비용 : 약 3.4조원

(단위: 억원)

구분	분류	세분	항목	'15년
직접 지원	국방예산	방위비 분담금 (SMA)	인건비	3,490
			군사건설비	4,148
			군수지원비	1,682
			소 계	9,320
	국방예산	기타	美 통신선 · 연합C4체계 사용비 <sup>A</sup>	153.8
			KATUSA 병력지원 <sup>B</sup>	98.3
			기지주변정비비 (MAGNUM 탄약고 정비) <sup>C</sup>	81.47
			부동산 지원 <sup>D</sup>	82.2
			소 계	415.77
	국방예산 외 지원		기지주변정비비 (주변도로사업 · 평택지원) <sup>E</sup>	14,542
			공무집행피해배상 <sup>F</sup>	1.4
소 계			14,543.4	
<b>직접지원 합계</b>				<b>24,279.17</b>
간접 지원	기회비용		무상공여토지임대료평가 <sup>G</sup>	7,105
			KATUSA 기회비용 <sup>H</sup>	936.39
			훈련장 사용지원 <sup>I</sup>	236
			소 계	8,277.39
	면제 · 감면 비용 <sup>J</sup>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수입 및 판매관련 세금 면제	1,134.7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91.61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85.747
			소 계	1,312.057
<b>간접지원 합계</b>				<b>9,589.447</b>
<b>총 계</b>				<b>33,868.62</b>

○ 한시적 비용 : 약 2조원

(단위: 억원)

구분	분류	항목	'15년
직접 지원	국방예산	기지이전특별협정 (YRP · LPP)	7,169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sup>K</sup>	84
		소 계	7,253
	국방예산 외 지원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sup>L</sup>	13,442
<b>총 계</b>			<b>20,695</b>

## 나. 항목 설명

### **A. 美 통신선·연합C4I체계 사용비**

- 근거: 특별협정(「한미연합사 통신비용부담합의서」) 과 비용분담 및 정보상호운용성체계(IIA)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간의 이행협정서
- 내용: 美 통신선(전체 사용액의 35% 분담) 및 연합 C4I체계 지원비용
  - 연합C4I 대상체계(5개): CENTRIXS-K·ACG-COIN, 체계관리 기술지원 전송체계
  - 연합C4I 체계별(항목별)로 공동분담 비율 차등 적용(33, 50, 85, 100%)

### **B. KATUSA 병력지원**

- 근거: 명시적 근거없음
- 내용: KATUSA 지원인력에 대하여 기본급·피복비 및 한국군지원단 운영 지원비용
  -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간의 구두협약

### **C. MAGNUM 탄약고 정비 (기지주변정비비)**

- 근거
  - 국제협약: 한미 SOFA 제2조·제5조, 주한미군지위협정 양해사항 2조·3조
  - 국내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78조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 2조
- 내용: 주한미군 MAGNUM 탄약고 주변 안전구역 토지매입 및 주민이주사업 추진비용

#### **D. 부동산 지원**

##### ○ 근거

- 국제협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한미 SOFA 제2조·제5조, 주한미군지위협정 양해사항 제2조-제3조
- 국내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내용: 시설부지·사용부지의 매입비·사용료·보상비 지원 비용

#### **E. 주변도로사업·평택지원 (기지주변정비비)**

##### ○ 근거

- 국제협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한미 SOFA 제2조·제3조·제5조
- 국내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수립한 발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평택기지 주변도로정비사업 및 평택지역 지원비용

#### **F. 공무집행피해배상**

○ 근거: 한미 SOFA 제23조

○ 내용: 주한미군의 군사훈련·공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나 인신 상해에 대한 배상비 지원비용

**G. 무상공여토지임대료평가\***

○ 근거

- 국제협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SOFA 제2조
- 국내법: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내용: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여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여토지의 공시지가평균금액에 법령상 요율(2.5%(전용지역만 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회비용

**H. KATUSA 기회비용\***

○ 내용: KATUSA 병력이 미군이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미군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 기회비용 산출방식

$$= [ ( \text{계급별 (E-1, E-2, E-3, E-4) 미군의 연 기본급} + \text{연간 외국어 능력수당} ) - \text{미군의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 연 급여} ]$$

**I. 훈련장 사용지원\***

○ 근거: SOFA 제2조·제5조와 우리군 훈련장 및 사격장의 미군 이용에 관한 각종 합의 각서, 양해 각서 등

○ 내용: 주한미군 사격훈련장이용 지원비용

- 기회비용 산출방식

$$= [ \text{면적(m}^2\text{)} \times \text{공시지가} \times \text{사용일수} / 365 \times \text{임대요율(0.05)} ]$$



## **J. 면제·감면비용\***

- 근거: SOFA 제6조·제10조·제14조·제16조 등
- 내용: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면제 또는 감면 규모

※ 1999년 ~ 2011년까지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주한미군 병력수를 고려하여  
한국국방연구원 (KIDA) 에서 추정

## **K.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 근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2조)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환경부 예규 제544호)
- 내용: 지자체가 오염정화를 실시하고,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비용

## **L. 반환공여구역토지매입**

- 근거
  - 국제협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 제2조
  - 국내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34조의2)
- 내용: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공여구역 또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반환된 공여구역 개발에 필요한 토지 매입금 일부 지원비용

### Ⅲ

## 한·일 주둔미군 지원규모 비교분석

### 1. 한일 주둔미군 지원항목 비교

#### 가. 지속적 비용 항목

구분	분류	세분	한 국	일 본	해당일본비용구조
직접 지원	국방예산	SMA	인건비	노무비(기본급, 수당) 노무비(복지)	SMA 방위비
			군사건설비	제공시설정비	방위비
				일본요청 재배치 비용	방위비
		군수지원비	훈련이전비	SMA	
		기타	美 통신선 · 연합C4체계 사용비	-	-
			KATUSA 병력지원	-	-
			기지주변정비비 (MAGNUM 탄약고 정비)	주변대책비 어업보상	방위비
	부동산 지원		시설임차료	방위비	
	국방예산 외 지원	기지주변정비비 (주변도로사업 · 평택지원)	기지·조정교부금	방위비 외 지원	
		공무집행피해배상	공무집행피해배상 (파악 어려움)	방위비 외 지원	
간접 지원	기회비용	무상공여토지임대료평가	국유보통재산추정임차비용	기회비용	
		훈련장 사용지원	-	-	
		KATUSA 기회비용	-	-	
	면제 · 감면 비용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수입 및 판매관련 세금 면제	세제면제 미일SOFA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근거 (파악 어려움)	간접지원(요금할인)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광열수도료	SMA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미일SOFA 제5조, 제7조에 근거 (파악 어려움)	간접지원(요금할인)	

※ 일본은 2011년부터 방위백서 및 외교백서에 주일미군 지원내역 공개

## 나. 한시적 비용 항목

구분	분류	한 국	일 본	해당일본비용구조
직접 지원	국방예산	기지이전특별협정 (YFP · LPP)	미군재편관계비	기지이전특별협정 (방위비)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국방예산 外 지원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SACO관계경비	방위비

※ 일본은 2011년부터 방위백서 및 외교백서에 주일미군 지원내역 공개

## 2. 한·일 주둔미군 지원규모 비교

### 가. 주둔미군 한·일 지원규모 현황비교('15년 기준)

단위: 억원(환율: 934.56원/100엔)

구분	한 국	일 본	규모비율	
SMA	9,320	13,831.5 (1,480억 엔)	67.4%	
지속적 비용	직접지원 (SMA 포함)	24,279.17	39,036.6 (4,177억 엔)	62.2%
	간접지원	9,589.447	15,560.4 (1,665억 엔)	61.6%
	<b>총 계</b>	<b>33,868.62</b>	<b>54,597.0</b> (5,842억 엔)	<b>62.0%</b>
한시적 비용	20,695	13,160.5 (1,408.2억 엔)	157.3%	
<b>전체 (지속적비용+한시적비용)</b>	<b>54,563.62</b>	<b>67,757.5</b> (7,250.2억 엔)	<b>80.5%</b>	
<b>주둔미군 총병력('15)</b>	<b>28,034명</b>	<b>62,108명</b>	<b>45.1%</b>	

※ 여기서 환율은 2015년 평균 환율을 의미(출처: IMF)

- 한국이 일본에 비해 한·일 간 주둔미군 총병력 비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주둔미군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주둔미군 병력당 한·일 지원규모 비교

### ○ 주둔미군 병력규모 비교

구분	주둔미군(현역)	주둔미군(총병력)
한국('15)	24,934	28,034
일본('15)	55,744	62,108
비율	44.73%	45.14%

※ 총병력 : 현역+예비역+미측 군무원

출처 : DoD, DMDC(Defence Manpower Data Center)

### ○ 주둔미군(총병력) 병력 대비 한·일 지원규모

(환율:934.56원/100엔)

구분		한 국		일 본
SMA		0.332억 원	>	0.223억 원 (0.024억 엔)
지속적 비용	직접지원	0.866억 원	>	0.629억 원 (0.067억 엔)
	간접지원	0.342억 원	>	0.251억 원 (0.027억 엔)
	총 계	1.208억 원	>	0.879억 원 (0.094억 엔)
한시적 비용		0.738억 원	>>	0.212억 원 (0.023억 엔)
전체 (지속적비용+한시적비용)		1.946억 원	>>	1.091억 원 (0.117억 엔)

출처 : DoD, DMDC(Defence Manpower Data Center)

- 주둔미군 병력(총병력)을 고려하면 한국이 모든 비용항목 구분에서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둔미군을 지원하고 있음

## 나. 한·일 자국민 근로자 비교

### ○ 한·일 근로자 수 비교('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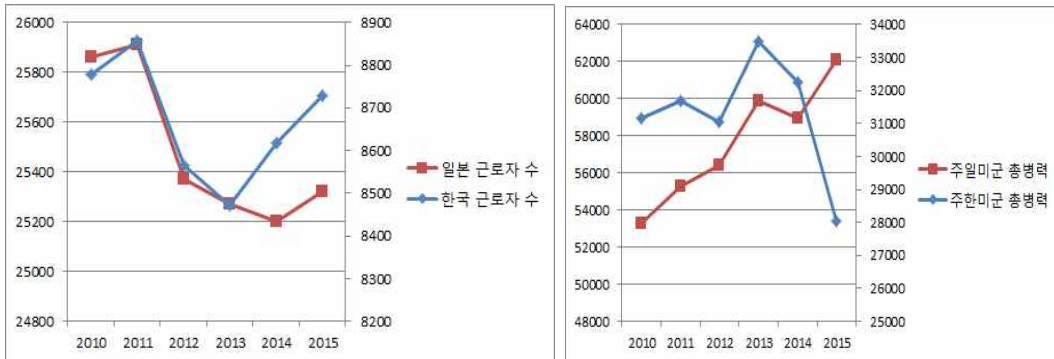
구분	총인원	비율
한국	11,899명 (8,730명(근로자)+3,169명(카투사))	47%
일본	25,319명(근로자)	

출처 : 한국 국방부, 일본 LMO(Labor Management Organization)

※ 근로자는 세출직 근로자 수

### ○ 한·일 근로자 수 추세 비교

한·일 근로자 수 추세 비교(카투사 미포함)    한·일 주둔미군 총병력 수 추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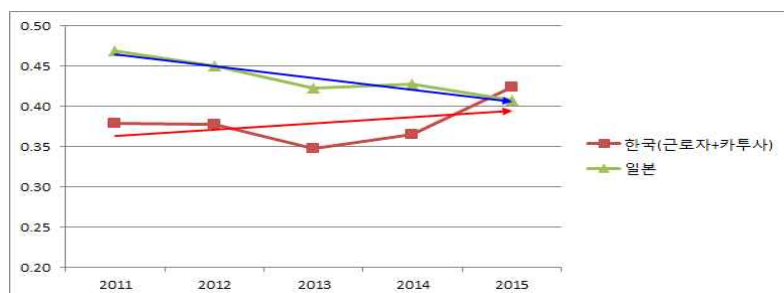


(일본은 왼쪽 축 기준, 한국은 오른쪽 축 기준)

- 한국의 경우, 주둔미군 병력이 감소하는 시기에도 근로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 주둔미군 병력 당 근로자 비율 추세 비교

한·일 주둔병력 대비 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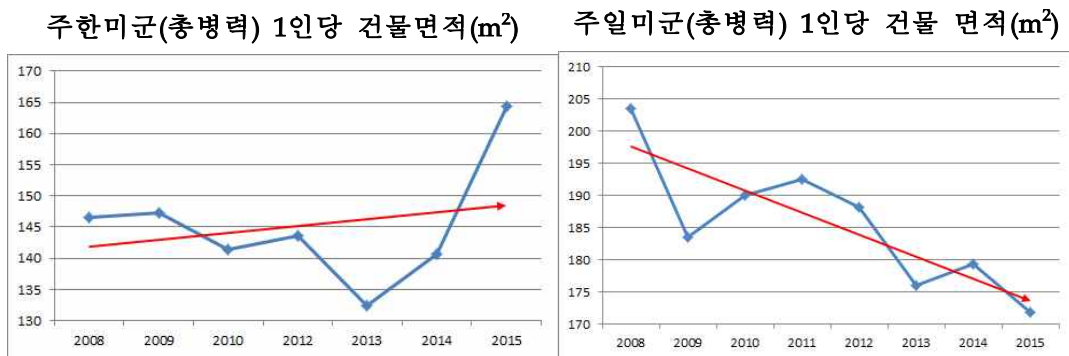
- 주둔병력 대비 근로자의 비율에서는 한국의 경우 꾸준한 상승되어 2015년을 기점으로 일본을 추월하였음

## 다. 한·일 주둔미군 시설규모 비교

○ 한·일 주둔미군 총 건물면적 비교('15년 기준)

구분	건물면적(m <sup>2</sup> )	비율
한국	4,607,389.4	43.17%
일본	10,672,134	

○ 주둔미군 병력 당 건물면적 추세 비교



출처 : DoD, Base Structure report

구분	연평균 증가율(%)
한국('08~'15)	1.7
일본('08~'15)	-2.4

- 주일미군 병력(총병력) 대비 시설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반면 주한미군 병력(총병력) 대비 시설지원규모는 '15년부터 평택기지이전사업으로 급격히 증가
- 현재 한국은 일본보다 주둔미군 병력(총병력) 1인당 건물 면적 다소 작지만 평택기지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병력 1인당 건물 면적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 건물면적('15년 기준): 일본: 171.83m<sup>2</sup> 한국: 164.35m<sup>2</sup>

## 라. 한·일 거시지표 대비 주둔미군 지원규모 비교

### ○ 한·일 거시지표 비교('15년 기준)

(환율:934.56원/100엔)

구분	GDP	정부최종소비지출	국방비 <sup>1)</sup>
한국('15년)	1564.1조 원	234.8조 원	37.56조 원
일본('15년)	4957.8조 원 (530.5조 엔)	984.1조 원 (105.3조 엔)	48.50조 원 (5.19조 엔)
<b>비율</b>	<b>31.5%</b>	<b>23.9%</b>	<b>77.4%</b>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ex, 2018, 국방예산수첩, 방위백서

### ○ GDP 대비 주둔미군 한·일 지원규모 비교('15년 기준)

구분	한 국		일 본	
SMA	0.060%	》	0.028%	
지속적 비용	직접지원	0.155%	》	0.079%
	간접지원	0.061%	》	0.031%
	<b>총 계</b>	<b>0.217%</b>	<b>》</b>	<b>0.110%</b>
한시적 비용	0.132%	》	0.027%	
<b>전체 (지속적비용+한시적비용)</b>	<b>0.349%</b>	<b>》</b>	<b>0.137%</b>	

### ○ 정부최종소비지출 대비 주둔미군 한·일 지원규모('15년 기준)

구분	한 국		일 본	
SMA	0.397%	》	0.141%	
지속적 비용	직접지원	1.034%	》	0.397%
	간접지원	0.408%	》	0.158%
	<b>총 계</b>	<b>1.442%</b>	<b>》</b>	<b>0.555%</b>
한시적 비용	0.881%	》	0.134%	
<b>전체 (지속적비용+한시적비용)</b>	<b>2.324%</b>	<b>》</b>	<b>0.689%</b>	

- 한·일 양국의 경제 및 정부재정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이 모든 비용항목 구분에서 일본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주둔미군을 지원하고 있음

1) 한·일 추경 예산 포함

○ 국방비 대비 주둔미군 한·일 지원규모('15년 기준)

구분		한 국		일 본
SMA		2.481%	<	2.852%
지속적 비용	직접지원	6.464%	<	8.048%
	간접지원	2.553%	<	3.208%
	<b>총 계</b>	<b>9.017%</b>	<	<b>11.256%</b>
한시적 비용		5.510%	>	2.713%
<b>전체 (지속적비용+한시적비용)</b>		<b>14.527%</b>	>	<b>13.970%</b>

- 한·일 양국의 국방비 규모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 따라 국방비 대비 방위비분담금(SMA) 및 지속적 지원 비용항목의 규모의 비율은 다소 일본이 높음
- 하지만 국방비 대비 포괄적인 의미의 주둔미군 관련 비용 전체의 규모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음



마. 미국 국방수권법에 정의된 동맹국 방위분담 구성항목별 비교 (15년 기준)

○ 4가지 구성항목

- ①미군 주둔비용지원(Cost-sharing), ②다국적군 군사 활동, ③국방비 수준, ④해외원조

2015년 연평균 환율: 934.56원/100엔 적용

단위: 억 원

		한국	일본	일본대비 한국비율(%)
방위비분담금(SMA)		9,320	13,831.50	67.38
①-1 미군주둔비용지원 합계 (지속적비용만 포함)		33,868.62	54,597.0	62.03
①-2 미군주둔비용지원 합계 (지속적비용+한시적비용)		54,563.62	67,757.5	80.53
다국적군 군사 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	26,096	16,036	162.73
	다국적군 평화활동	17,961	-	-
② 다국적군 군사 활동 합계		44,057	16,036	274.74
③-1 국방비 수준(①-1+다국적군사활동 제외)		297,674.38	414,403.64	71.83
③-2 국방비 수준(①-2+다국적군사활동 제외)		276,979.38	401,243.14	69.03
④ 해외원조		5,751	26,751	21.50
<b>총 합계(동맹국의 분담비용) (①+②+③+④)</b>		<b>381,351</b>	<b>511,788.64</b>	<b>74.51</b>
참고사항	GDP	1,564.1조 원	4,957.8조 원	31.6
	정부총지출	234.8조 원	984조 원	23.9
	미군주둔인원수	24,934명	55,744명	44.73

출처: 일본 2015년 방위성 예산, 2015년도 국방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 일본과의 비교분석결과, SMA, 미군주둔비용 지원 및 동맹국 방위분담(Burden-sharing)의 지원규모는 한·일간의 경제·재정규모 및 주둔미군 규모를 고려하면(일본의 약30~40%수준) 일본에 비해 한국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음